# 포째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(21.1.7 공과 주의사용

종이	패

- (재활용 보통) "재활용 보통\*"에 해당하는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 확대
  - (기존) PE 재질 → (개정) 합성수지 재질
  - \*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(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)의 10% 이내인 경우 '재활용 보통'에 해당

#### □ 유리병

- (재활용 어려움) 2개 재질·구조 삭제, 1개 재질·구조 추가
  - (삭제) 몸체 : 몸체에 표면코팅(Hot코팅, Cold코팅, 플라스틱 코팅 제외) 또는 도색

라벨 : 몸체에 직접인쇄(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)

- (추가) 라벨 : PVC 계열의 재질

# □ 철캔 및 알루미늄캔

○ (재활용 우수) 1개 재질·구조(라벨 미사용) 추가

## □ 페트병

- (재활용 최우수) 2개 재질·구조(라벨 미사용, 병마개 부착 라벨) 추가
- (재활용 어려움) 1개 재질·구조를 "재활용 보통"으로 등급 상향
  - (마개 및 잡자재)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몸체, 마개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경우 "재활용 보통"에 해당
- □ 단일재질 용기, 트레이류(몸체가 PET 이외의 재질)
  - (재활용 우수) 1개 재질·구조(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) 추가
    - (라벨, 마개 및 잡자재 재질) 기존 : PE, PP → 개정 : PE, PP, PP+PE
  - (재활용 보통) 1개 재질·구조(의약품 안전용기·포장 및 투약계량 에 관한 규정 추가
    - "의약품 안전용기·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"에 따른 특수 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'재활용 보통'에 해당

### □ 시행일 및 경과규정

-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('21.1.7)부터 시행
-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**경과조치** 
  -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간주
  - 재질·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·수입하거나,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신청 서를 제출